

도미니카공화국 비자

(Ver. DECEMBER, 2018)

도미니카공화국은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 국가로 **90 일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입니다.

반드시 **왕복항공티켓**을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사증면제협정국가 정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과 참조 <http://www.0404.go.kr/visaList.do?menuNo=4030000&tabCode=401>)

무비자(관광비자) 연장은 최대 **4 개월(120 일: 최초 90 일 포함)**까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가능합니다. 즉 관광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4 개월** 밖에 안됩니다.

연장 또한 입국하여 무비자(관광비자) 기간 연장의 경우 도미니카공화국 입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민청에 가서서 연장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4 개월 이상의 체류 혹은 거주, 업무, 학업 등의 목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을 입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하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후,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바로 체류자격변경 형태로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관광비자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최초의 비자는 반드시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가야 합니다. (갱신시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만료일 45 일 이전에 갱신)

- ➔ 저희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은 비자 승인 허가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에서 승인된 경우만 비자를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의 위조 유-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비서류만 받아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 전자시스템으로 컬러 스캔하여 전송합니다.
- ➔ 비자 신청 서류 제출 최소 하루 전에 저희 대사관에 전화로 인터뷰 약속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소요시간 5-10 분) (오전 9:30-12:00)
- ➔ 본인께서 직접 신청하러 오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신청할 경우, 대표자 단독 가능)
- ➔ 또한 비자 승인 전에 비행기티켓을 구입하는 것을 권유 하지 않습니다.
- ➔ 비자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3 주, 최대 2 개월도 걸립니다.
- ➔ 신청인의 비자 승인이 확정되면, 저희 대사관에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 ➔ 비자 승인 후 비자 받으러 대사관에 방문 시,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못 올 경우 위임할 수 있고, 위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바랍니다.
- ➔ 비자 수수료는 **U\$100** 입니다.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불합니다.)
- ➔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마지막 페이지 '참고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기타의 목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 비자가 필요하신 경우는 대사관으로 직접 문의 부탁 드립니다. TEL: 02-756-3513 E-Mail: embadomcorea@gmail.com

방문 목적에 따른 비자의 종류:

비자 종류	기간	대상
NM (Multiple Business)	1 년	➤ 상업, 사업 혹은 업무상으로 방문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서 도미니카공화국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하여 방문하려는 자 ➤ 종교목적(선교사, 부임목사 등) ** 단, 이 비자는 가족 동반 비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60 일이상 연속체류가 불가능한 비자 입니다. *매년 1년마다 현지 도미공 이민청에서 갱신 가능
NM1 (Working)	1 년	➤ 도미니카공화국에 주재하는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방문하려는 자 *매년 1년마다 현지 도미공 이민청에서 갱신 가능
RS	60 일	➤ 한국 분들의 경우 이미 도미니카공화국에 RS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직계가족으로서 현지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 ➤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을 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한국인 ➤ 임대업, 퇴직연금 수급자, 투자이민(최소 USD200,000)의 해당 *RS 비자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도미공에 도착. 이민청에 수속밟음 비자 기간은 각각에 따라 다르나 기본 1년임. 갱신 또한 도미공현지 이민청에서 이루어짐
E	1 년	➤ 교환학생, 장학생등 학업의 목적으로 6 개월 이상 체류로 방문하려는 자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가 필수)
DPM	1 년	➤ RS, NM1 비자종류를 가진 사람의 직계가족으로서 동반 출국하거나 거주해야 하는 자
OM	1 년	➤ 공무여권(Official Passport) 소지자
CS - CM	60 일 - 1 년	➤ 대사관에서 승인하고 보증하는 자 (국가기관 관련 공무원 등등)

‘참고사항’(비자 승인 후 도미니카공화국 입국관련)

(현재 이민청의 사정과 비자종류에 따라 수속과정이나 필요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비자 발급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제출하셨던 원본 서류를 돌려받게 됩니다.

비자에는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소지한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며, 도미니카공화국 입국일로부터(입국도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0일 안에** 원본 서류와 함께 도미니카공화국 산토 도밍고에 있는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스페인어로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주소 : Autopista 30 de Mayo Esq. Héroes de Luperón, Santo Domingo 10401, Teléfono:(809)508-2555 / 업무 시간 8:00 AM - 3:00 PM)에 원본 서류를 일체 납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면 다음 비자 갱신시에, 다시 한국에 귀국하여, 처음부터 신청서류를 다시 만들게 되며 갱신이 아닌, 새로 신청하시게 됩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 웹사이트: <http://www.migracion.gob.do>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 방문시 기본적인 수속 순서: (간략)

● 아래의 수속 순서나 방식은 현지 이민청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이점 숙지 하셔서 도미니카공화국 도착과 함께 먼저 이민청에 문의 하시고 방문 하셔서 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 등록증과 거주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지문을 찍기 때문에 비자 발급 받은 분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정면 사진 4매, 측면 사진 4매 : 이민청에서 직접 찍으실 수도 있을겁니다

1. 임시거주비자 수속 창구 방문 하여 ‘여권, 여권 사본, 최종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페이지’ 제출하여 수속 하고 영수증 받습니다.
2. 1번의 과정을 거치면, 다시 한 번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따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수속 창구에 가서 **여권 사본 2매, 비자 사본 2매, 기본증명서 사본 1매 그리고 위 1번에서 에서 받은 영수증 제출** 하시고 건강검진 비용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청에서 건강검진실로 안내할 겁니다.
3. 건강검진이 끝나면, 모든 일체 원본 서류를 가지고 특별 서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청에서 임시거주신청서(Formulario de solicitud de residencia temporal)를 드립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시게 되는데 그때 전자 지문과 서명을 하게 될 겁니다.

4. 이 과정이 끝나면 기타 서류도 모두 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부에서 모든 서류가 문제가 없을시 “서류제출증서(Depósito de Expediente)” 를 교부 합니다.

혹, 서류를 되돌려 받았을 경우에는 이유제시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후에 위에서 받으신 Depósito de Expediente (서류제출증서)를 가지고 이민청에 가서서 최종 승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승인을 받으셨다면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등록등본(Constancia de Cédula) 과 거주증(Carnet de Residencia)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등록등본(Constancia de Cédula)과 거주증(Carnet de Residencia)을 신청하기 위한 약속 날짜를 받게 되면, 그 날짜에 가서서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등록등본(Constancia de Cédula)을 받으십시오.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그 등본을 가지고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Junta Central Electoral)'에 가서서 제출 하십시오. 그러면 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 주민등록증(la Cédula de Identidad de Extranjero)을 받게 됩니다. 받으신 주민증을 가지고 다시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 가서서 제시 하면, 도미니카공화국 거주증(Carnet de Residencia)을 받게 됩니다. **즉, 모든 과정이 끝나면, 최종 2개의 등록증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등록증과 거주증)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